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28

발의연월일: 2021. 3. 16.

발 의 자: 장철민·김민철·이병훈

박찬대 · 강훈식 · 임오경

김민석 • 홍영표 • 서동용

황운하 • 유정주 • 안호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국민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.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발열, 근육통, 몸살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남. 면역반응 발생 시 근로자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줄 수 있고,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방해를 줄수 있음.

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, 예방접종 확대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 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가 그비용을 지원토록 함. 또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, 일용직노동자등도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(안 제41조의2 및 제70조의4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조의2제1항 중 "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"를 "입원, 격리 또는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을 접종한 경우"로, "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"을 "해당기간 동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3항"을 "제1항의 예방접종의 종류, 제3항"으로 한다.

제70조의4제1항 중 "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"을 "입원 또는 격리되거나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을 접종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필요한 사항은"을 "필요한 사항 및 제1항의 예방접종의 종류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했 개 아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 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, 격리 또는 심한 면역반응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이 예상되는 예방접종을 접종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한 경우 -----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 ----- 해당기간 동안 -----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④ 제1항의 예방접종의 종류, 범위 및 신청・지원 절차 등 제3항-----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| 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 ① 질병관리청장, 시 생활지원) ① -----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-----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격리되거나 심한 면역반응이 범위에서 치료비, 생활지원 및 예상되는 예방접종을 접종한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사람-----

있다.	
	,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	3
원·제공을 위하여 <u>필요한 사</u>	필요한 사
<u>항은</u>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항 및 제1항의 예방접종의 종
	류는